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연방법무부, 화학고무 카르텔에 대해 벌금 부과

미국 커넥티컷 주에 본사를 둔 고무 화학합성물 제조업체인 Crompton 사는 고무 화학합성물 시장에서의 국제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혐의를 인정하고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Crompton사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다른 사업자들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와 합의에 따라, Crompton사는 법무부의 조사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무 화학첨가제는 타이어, 호스, 벨트 및 신발 등과 같은 고무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일련의 물질을 말한다.

“고무 화학합성물은 타이어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매일 수백만의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이용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이다”고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 카르텔 행위를 봉쇄하려는 독점금지국 활동의 일례이다”고 덧붙였다.

Crompton사는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수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서 고무 화학합성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합에 참가
-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
- 합의된 대로 이를 이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회합에 참가
- 합의된 가격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가격 책정
- 미국과 다른 국가들 내에서 고무 화학합성물의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고무 화학합성물 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에서 적발한 첫 번째 사례이다”고 James M. Griffin 형사집행부장은 말했다. Crompton사는 셔먼법 위반으로 제소되었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해서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벌금 부과 한도액은 당해 범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이로 인해 입은 피해액의 2배로까지 증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독점금지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와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공조로 진행되었다.

2004. 3. 15. 연방법무부

건설회사의 대표들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

밀워키 연방대배심은 도로건설업을

하는 2개의 건설업체와 4명의 회사 대표들을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위스콘신 주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입찰 및 그 밖의 여러 주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건설 공사에 입찰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고속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자신들끼리 할당하여 입찰과정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공사비를 낮게 혹은 높게 제시했으며, 어느 경우에는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도 했다. 국도, 고속도로, 교량 및 공항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위스콘신 주에서만 추산해도 1억 달러가 넘는 대형프로젝트들이다.

“이번 기소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2004. 3. 9. 연방법무부

반트러스트국, Oracle에 의한 PeopleSoft 취득안 금지를 요구하며 Oracle을 기소

당해 취득안은 가격의 상승, 혁신 및 선택 폭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판단

법무부는 금일 Oracle에 의한 PeopleSoft 취득안을 금지하기 위

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본 건 합병계획의 진행을 허용하면 인재관리 및 재무관리를 위한 기업의 소프트웨어 application 분야에 있어서 국내 주요 2개사 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동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관공서 및 그 밖의 조직에 대한 가격 상승, 혁신 및 선택 폭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하와이 주, 메릴랜드 주, 메사추세츠 주, 미네소타 주, 뉴욕 주, 노스다코타 주 및 텍사스 주의 각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에 의한 본 소송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본 건 합병이 순수하고도 단순하게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R. Hewitt Pate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했다. 「전통적인 합병 분석에 따르면 본 건 합병은 중요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본 건 합병의 금지는 다수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상의 세금 가치를 얻기 위해 경쟁에 의존하는 관공서에도 이익이 되는 경쟁을 보호하게 된다」.

금일 글로벌화 한 경제에서 운영비용을 삭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기업이든 관공서든 NPO든 불문하고 그 조직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용을 삭감하고 전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대기업은 각각의 필요성에 맞추어 설계가 가능하

며, 복수의 부국(部局)이나 자회사, 복수의 사업라인 및 복수의 법적 관할권 사이에서 동시에 시뮬레이션으로 중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재무관리와 인재관리를 자동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Oracle, PeopleSoft 및 그 밖의 1개사인 SAP만이 현재 이러한 대기업의 요구에 맞는 고기능을 통합한 인재관리 및 재무관리 서비스·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 때문에 Oracle과 PeopleSoft는 복잡하고도 장기화한 공개매입 간에도 이따금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고 양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입, 그 결과 치열한 가격결함인으로 고객이 이익을 얻어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보다 발전한다.

「대기업, 기관, 조직 및 관공서는 효율적이고도 비용 대 효과가 높은 일상의 업무운영에 중요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유지에 관한 경쟁에 의존하고 있다. 본 소송은 중요 산업에서 활발한 경쟁의 지속적인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Pate 국장은 언급했다.

Oracle은 캘리포니아 주 Redwood City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자. 2003년 Oracle의 수입은 90억 달러를 넘고, 그 중 20억 달러 이상을 기업 소프트웨어 application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PeopleSoft는 캘리포니아 주

Pleasanton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다. 2003년 PeopleSoft의 수입은 20억 달러를 넘고, 그 전체 매출이 기업 소프트웨어 application 으로 이루어졌다.

2004. 2. 26. 미 법무부
일본 월간 「공정취진」 2004. 3월호 발췌

EU

EU위원회, 도축업사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독일 도축사업자인 Nordfleisch의 주식을 네덜란드 회사인 Best Agrifund사가 취득하는 것을 인가했다.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탄생하는 회사는 덴마크 Crown 사의 뒤를 이어 유럽내 제2위 규모의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번 결합으로 돼지와 소의 가공 및 판매시장과 같은 여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칠 이 기업결합은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Nordfleisch사와 Best Agrifund사는 돼지와 소의 도축, 구매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생고기뿐만 아니라 가공육도 판매하고 있으며, 혈장

이나 헤모글로빈과 같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물도 수집·판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슈퍼마켓, 요식업자 및 정육점 등과 같은 여러 계층의 구매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결합회사들이 어느 시장에서는 우월적인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혈장이나 헤모글로빈의 생산을 위한 혈액가공사업과 같은 경우 결합기업들이 지배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시장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업결합 후에도 경쟁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유럽에서는 역내시장에서 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1월 13일에 신고됐었으나 그 당시 완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었고, 2월 18일에 비로소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한편 Best Agrifund사는 이번에 Nordfleisch사를 기업결합하기에 앞서, 이미 작년에는 네덜란드 회사인 Dumeco와 독일 회사인 Moksels사를 합병한 바 있다.

2004. 3. 19. EU위원회

EU위원회, 가스회사간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규칙에 따라서 독일의 Messer 그룹이 독일, 영국 및 미국에서 프랑스계 산업용 가스 회사인 Air Liquide사를 통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기업결합이 Air Liquide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독일에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당사회사들이 영업의 일부를 매각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기업결합 승인서에 포함시키면서 이번 기업결합을 인정하게 되었다.

Air Liquide사와 Messer 그룹은 산업용 가스 회사들로서, 산업 및 의료용 가스의 생산 및 유통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는 제철, 제강, 정제, 화학, 유리, 전기, 제지, 식품 및 항공 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 Air Liquide사는 이번 기업결합 케이스를 유럽위원회에 신고했다.

EU위원회는 시장 조사과정에서 가스 저장 부지가 필요하거나 가스 공급관이 필요한 대규모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을 하는 경우에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석유화학회사들이나 제철회사들이 전형적인 이러한 대규모 수요자들에 해당된다.

이 시장에서 Air Liquide사는 유럽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유럽의 대규모 산업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라인/루르 및 자르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Messer 그룹의 가스관 네트워크를 Air Liquide사가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또한 반도체 제조에 이용되는 가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회사들이 결합할 경우 텅스텐헥사플루오르(Tungstenhexafluoride)라고 하는 특정 가스 부문에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차원에서는, 독일내 산업용과 의료용 가스 시장에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시장은 이미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앞으로 결합기업과 Linde사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들간의 독일내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0%~80% 정도가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영국에서는 어떠한 경쟁상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았다.

위원회가 우려하는 경쟁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심층조사절차를 피하기 위해, Air Liquide사는 독일에서의 자신과 Messer 그룹의 영업 부문 중에서 일부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자산가치로는 2억 유로 정도로 추산된다.

Air Liquide사가 제시한 방안을 검

토한 후, EU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004. 3. 15. EU위원회

EU위원회, 맥주생산업자인 칼스버그와 올슈타인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덴마크 맥주생산업자인 Carlsberg사가 독일 맥주생산업자 Holsten사를 주식취득의 방법으로 기업결합 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olsten사는 Holsten, Lubzer, Astra, Feldschlosschen, Duckstein, Landskron, König, Licher 및 Kelts와 같은 브랜드를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독일 북부와 서부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Carlsberg사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맥주생산·마케팅·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현재 독일, 덴마크, 핀란드 및 아이슬란드 국가에서 맥주생산과 관련하여 미미한 부분에서만 중복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독일 맥주 시장에서 Carlsberg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보았다. 덴마크, 핀란드 및 아이슬란드에서도 Holsten사가 이들 국가에서 틈새시장에서 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Carlsberg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Holsten사의 영업의 일부(주로 König와 Licher 브랜드를 사용하는 영업부문)를 독일 맥주사업자인 Bitburger사에 매각할 뜻을 비취은 것도 고려됐다.

2004. 3. 17. EU위원회

독일

기업결합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Lignum Technologie AG가 기업결합규정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이미 행한 기업결합 케이스에 대하여 총 6만 5천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ignum Technologie사는 1999년 11월에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Homag Holzbearbeitungssysteme AG가 출자하고 있다. 그 결과 IMA AG사는 Lignum Technologie사와 기업결합을 하게 되었다.

기업결합규정에 따라 연방카르텔청

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번 기업결합 케이스는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연방카르텔청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기업결합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목조가구 및 목조건축업자 관련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 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음이 밝혀짐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과징금 부과명령은 최종적인 것이다.

2004. 3. 1.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취위, 토큐 주차 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토큐 주차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토큐 주차 시스템즈)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5항(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조치 했다.

토큐 주차 시스템즈는 도쿄에 위치한 회사로서, 토큐 차량제조 주식회사에서 만든 2단 방식 및 다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보수업과 함께, 이 주차장치 전용의 보수용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2단 방식 및 다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수업무에 대해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단 방식 및 다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치란 2단 또는 3단 등의 입체에 설치된 주차 스페이스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키고, 정해진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토큐 주차 시스템즈는 토큐 차량제조 주식회사가 만든 2단 방식 및 다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업자나 소유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들의 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보수업자(2단 방식 및 다단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서 주차장치회사 및 그 자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에게 주차장치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첫째, 보수용 부품이 충분하여 즉시 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회사에게 새롭게 제조를 위탁해 보수용 부품을 판매하여서 출고 시기를 현저하게 늦췄다. 둘째, 합리적 이유 없이 자사 또는 토큐 차량제조 주식회사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차장치의 관리업자나 소유자와 독점적 판매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부품회사 등에 새롭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최저 발주 가능 수량 단위로서만 판매함으로써, 독립적인 보수업자와 주차장치 관리업자나 소유자 등과의 보수업무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했다.

이에 대해 공취위는 토큐 주차 시스템즈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향

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독립적인 보수업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들에게 철저히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를 응낙했을 때는 권고와 동일한 취지의 심리판결을 하며, 만일 권고에 응낙하지 않을 때는 심판 수속을 개시하게 된다.

2004. 3. 18.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합성수지 방수재 판매업자 및 거래처 방수공사업자단체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합성수지 방수재 판매업자 및 그 판매업자의 거래처 방수공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3항(구속조건부거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동 법 제8조제1항제4호(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경고조치 했다.

주식회사 다이프렉스는 합성수지 방수재 판매업자로서 도쿄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거래처 방수공사업자단체의 명칭은 다이프렉스 방수공사업 협동조합으로서 다이프렉스사에서 만든 방수재를 이용해 시공을 하는 161명의 방수공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먼저 주식회사 다이프렉스의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래처 방수공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고 있는 방수재 거래계약에서 자신이 공급하는 방수재를 이용해 시공하는 방수공사의 최저 시공 단가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 거래처 방수공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 다이프렉스 방수공사업 협동조합의 구성조합원들로 하여금 방수공사의 영업활동에 관해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 새롭게 동사와 거래하기 위해서 다이프렉스 방수공사업 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해, 미리 정한 영업활동의 료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 한편 다이프렉스 방수공사업 협동조합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설계에서 어느 조합원이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이프렉스 방수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방수재를 수주 받아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이 건축 과정에서 다이프렉스 제품을 쓰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주식회사 다이프렉스의 지점이나 영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의 지부 사무실에 보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의 료를 정했다.
- 준조합원도 위와 같은 원칙에 준하

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 료를 정하여 실시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주식회사 다이프렉스 및 다이프렉스 방수공사업 협동조합의 범위안 행위에 대하여 공취위는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4. 3. 11. 공정취인위원회

관동항업 주식회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2004년 2월 27일 관동항업 주식회사(이하 관동항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취인위원회가 2001년 8월 9일 관동항업 외 1사에 대해 권고를 했는데, 관동항업이 동 권고에 불복함으로써 심판이 개시되어 진행되어 오다가 2003년 11월 28일 행해진 심리판결에 의해 심판 수속이 종료되었다.

관동항업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도쿄국제공항 내에 있는 보세 건물 2사의 혼중용 창고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혼중화물(주)의 혼중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통관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요금 결정을 담합하였다. 이는 사업자는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금지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며, 동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대가와 관련 되는 것'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취위는 관동항업에 대해 3,682만 엔의 과징금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혼중화물이란 식물방역법 규정에 근거한 검사 결과, 수입하기 위해서는 혼중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2004. 3. 3. 공정취인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지침 공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공정취인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의 작성이나 중요 안건의 공표 등을 통해 심사내용을 투명화·명확화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거래분야의 확정이나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를 고려함에 있어,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한층 확보하여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각계 각종에서 있어 왔다.

공정취인위원회는 2002년 12월에 사전상담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 방침과 병행하여 상세 심사 사안에 대해서는 회답을 문서로 할 것과 일정한 거래분야 확정이나 독점금지법상의 판단의 이유 등에 대

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공표 할 것을 밝힘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기업결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시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기업결합심사의 경험을 근거로 이번에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 원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원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운용지침 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기업 그룹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자회사와의 합병 등에 대하여 손자 회사와의 합병 등 및 형제 회사의 자회사와의 합병 등에 대해서도 통상 기업결합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취지를 명시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확정시 고려 요소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다.

(3) 기업결합의 유형(수평형·수직형·혼합형)마다, 기업결합이 어떠한 경우에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지에 대해서 판단 요소를 명확화 했다.

(4) 통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여겨지지 않는 유형을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5)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문제 해소 조치)의 유형으

로서 사업부문의 영업양도 등을 명시했다.

2004. 3. 23. 공정취임위원회

오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광대역 인터넷 요금과 관련하여 경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ACCC)는 Telstra사의 인터넷 요금 책정과 관련하여 경고를 했다고 Graeme Samuel 위원장이 밝혔다. 이러한 경고를 하기에 앞서, ACCC는 기간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ACCC는 Telstra사가 경고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ACCC는 Telstra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매시장에서의 요금을 고려해 볼 때 도매시장에서의 요금 책정을 함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Samuel 위원장은 말했다.

지난 2004년 2월 16일에 Telstra사가 새로운 ADSL 요금을 내놓은 이후, ACCC는 그 동안 요금 분석을 해왔다. 현재는 Telstra사와 그의 도매 고객 사이의 협상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CCC가 이번에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경쟁

적인 도매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elstra사가 그의 도매 고객들과 조속히 협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협상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이 결정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ACCC는 다시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후에 결정되는 요금이 적절하지 여부가 앞으로 Telstra사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한 ACCC는 일정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매일 1백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규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주법 Part XIB에 포함되어 있는 1A에서는 기간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ection 151AJ에서는 기간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151AKA(8)에서는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보기에 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러한 사실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SL이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리선을 이용하여 기존의 2선식 가입자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전화국에서 가정으로 또는 가정에서 전화국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화국에서 가정으로 전송되는 통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데 비해, 그 반대 방향으로의 전송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한다. 인터넷 접속이나 쌍방향 TV 등에서 전형적인 비대칭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2004. 3. 19.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토요타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상의 거듭되는 오류 경쟁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토요타 자동차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Corolla, Levin, Wagon 관련 웹사이트상의 실수에 대해 법원이 집행 가능한 조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업에게 웹사이트상의 정보의 정정을 보증하는 것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에 걸쳐 토요타는 웹사이트상 및 팸플렛상에서 Levin, Wagon의 판매 촉진을 하였고, 실제로는 앞좌석만

파워윈도우인데 앞뒤좌석의 파워윈도우가 표준장비인 것처럼 표시해 왔다」고 Graeme Samuel ACCC 위원장은 언급했다.

토요타는 2002년 2월에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과실로 인해 이 때는 토요타의 웹사이트의 일부를 정정했을 뿐이었다. 더욱이 토요타는 2002년 9월에 소비자로부터 오류 지적을 받고 이 때는 팸플렛을 정정했다. 그러나 ACCC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ACCC는 비록 늦지만 2003년 7월까지 개선된 웹사이트상의 실수를 발견하였다.

토요타는 ACCC에 의한 심사에서 ACCC에 협력했다. 화해의 한 부분으로서 토요타는 웹사이트 및 1974년 거래관행법의 준수확보 프로세스의 2가지에 대해서 연차감사를 받고, ACCC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에 근거하여 토요타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에 걸쳐서 Levin, Wagon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 대해 실수에 대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 웹상 표시로 인해 오인되었다고 신고한 고객에게 배상을 하였다.

「인터넷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최초 단계로 이용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그 때문에 기업에게는 웹사이트상의 어떠한 정보도 정확한 것을 확보할 의무가 있

다」고 Samuel 위원장은 언급했다.

2004. 2. 4.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3월호 발췌